

경영계획 및 성과평가 규정

제 정 : 1999. 1.18
제1차개정 : 2000. 2.28
제2차개정 : 2001.10.31
제3차개정 : 2004. 2.10
제4차개정 : 2005. 7.22
제5차개정 : 2007.12.27
제6차개정 : 2009. 3.26
제7차개정 : 2009.11.20
제8차개정 : 2010. 7. 6
제9차개정 : 2012.10. 4
제10차 개정 : 2020. 9. 1
제11차 개정 : 2023. 8. 30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영계획의 수립, 추진, 점검, 변경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중장기경영목표”란 무역보험법 제1조에 따른 공사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전 및 핵심가치 등의 가치체계를 설정하고,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 목표, 전략과제 등이 포함된 5개년 단위의 계획 및 목표를 말한다.
2. “단기사업계획”이란 중장기경영목표 및 목표관리주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목표, 중점 추진과제, 시행시기 등을 포함한 연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.
3. “조직목표”란 공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한다.
4. “부서목표”란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각 부서가 해당 사업연도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한다.
5. “팀목표”란 조직목표 또는 부서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각 팀(국내외 지사 및 주재원

- 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해당 사업연도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한다.
6. “목표관리주체”란 목표달성의 책임을 갖는 자로서 조직목표의 경우 사장 및 본부장, 부서목표의 경우 각 부서장 그리고 팀목표의 경우에는 각 팀장(국내외 지사장 및 주재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말한다.
 7. “사업연도”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을 말한다.
 8. “본부장”은 본부를 관장하는 임원 내지 1급 직원을 말한다.

제2장 경영계획

제1절 중장기경영목표

제3조(수립) ① 경영계획 담당 본부장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비전, 핵심가치 등을 포함한 중장기경영목표를 5개년 단위로 매년 작성하고,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수립한다.

② 경영계획 담당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중장기경영목표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한다.

제4조(추진) 각 본부장(사장 직속 부서의 경우에는 부서장을 의미한다. 이하 같다)은 중장기경영목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경영목표의 전략목표, 전략과제 등이 부서(지사)별 단기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점검) 경영계획 담당 본부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중장기경영목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, 경영계획 담당 부서장은 이를 사장에게 보고한다.

제6조(변경) ① 중장기경영목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변경할 수 있다.

1. 경제여건, 국가정책방향 등 사업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경우
2. 정부로부터 중장기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
3. 이전 사업연도 중 중장기경영목표의 추진실적이 미진하여 다음 사업연도부터 동 목표의 정상적 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4. 기타 중장기경영목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② 경영계획 담당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중장기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

부처 장관에게 제출한다.

제6조의2(중장기 경영에 관한 계획 등) ① 경영계획 담당 본부장은 대내외 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별도로 공사의 중장기 경영에 관련된 계획 등을 작성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서 작성된 계획은 차기 중장기경영목표에 반영한다.

제6조의3(중장기전략위원회) ① 경영계획 담당 본부장은 중장기경영목표의 수립, 추진, 점검, 변경 등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중장기전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본부장으로 구성되며, 경영계획 담당 본부장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며,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경영계획 및 성과평가 요강」(이하 “요강”이라 한다)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1. 중장기경영목표 추진실적 점검 및 변경 필요사항

2. 중장기경영목표와 단기사업계획 간 연계성

④ 경영계획 담당 부서장은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중장기전략추진 실무협의체를 설치·운영하며,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요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2절 단기사업계획

제7조(수립) ① 각 목표관리주체는 중장기경영목표를 기초로 해당 사업연도에 추진하여야 할 중점 추진과제, 세부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단기사업계획을 작성하고, 담당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사장이 목표를 수립·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목표관리주체에 대해서는 단기사업계획 수립주체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8조(추진) 각 목표관리주체는 중점 추진과제, 세부추진계획 등을 단기사업계획 과제별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한다.

제9조(점검) ① 각 본부장은 단기사업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고, 해당 부서장은 이를 사장에게 보고한다.

② 각 목표관리주체는 해당 사업의 추진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 및 경영계획 담당 부서에 이를 보고하여 중장기경영목표 및 단기사업계획에 그

점검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0조(변경) 단기사업계획은 해당 기간 중 변경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기간 중에도 변경할 수 있다.

1. 목표관리주체의 신설, 통합, 변경, 소멸 등이 발생한 경우
2. 기타 단기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담당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3장 성과평가

제1절 총칙

제11조(평가대상) 중장기경영목표 및 단기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는 각 목표관리주체별로 평가한다.

제12조(평가횟수) 성과평가는 연 1회 실시한다. 다만, 중장기경영목표 및 단기사업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13조(평가기준일) 성과평가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연간의 성과를 평가한다. 다만, 제12조 단서에 의한 평가기준일은 성과평가 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2절 성과측정

제14조(성과측정) 각 목표관리주체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성과평가 담당 부서장과 함께 성과측정을 실시한다.

제15조(성과측정 결과조정) 성과평가 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측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3절 성과평가

제16조(성과평가) 성과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3단계로 실시한다.

제17조(평가결과통보 등) ①성과평가 담당 부서장은 성과평가 결과가 근무평정, 차등 성과급, 예산배정 등 인센티브제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각 목표관리주체의 성과평가 결과를 관련 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한다.

②성과평가 담당 부서장은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도 관련 담당 부서 앞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③성과평가 담당 부서장은 각 목표관리주체의 성과평가 결과를 해당 목표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성과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4장 보칙

제18조(세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요강으로 정한다.

부칙(제정)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첫번째 사업 연도는 1999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.
- ③ (경과조치) 1998년도 하반기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하반기 및 연간 심사분석은 종전의 종합운영계획 및 심사분석규정을 적용한다.
- ④ (다른 규정의 폐지) 종합운영계획 및 심사분석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(1)

이 규정은 2000년 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)

이 규정은 2001년 10월 3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(3)

이 규정은 2004년 2월 10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(4)

이 규정은 2005년 7월 22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(5)

이 규정은 2007년 12월 27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(6)

이 규정은 2009년 3월 26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(7)

이 규정은 2009년 1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(8)

이 규정은 2010년 7월 6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(9)

이 규정은 2012년 10월 4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(10)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(11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8월 30일 부터 시행한다.